

●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309호

「신기술·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2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신기술·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(법률 제21154호, '25.12.2. 개정)」에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’의 용어가 ‘신기술·신제품 지정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 하위 규정인 「신기술·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」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, 해당 조문에 사용된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’ 관련 용어를 ‘인증’에서 ‘지정’으로 변경 (안 - 제명, 제1조 내지 제5조, 제7조 내지 제8조, 제11조, 제15조 내지 제16조, 서식

1호 내지 3호)

나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(안 - 제15조)

다. 제16조제1항의 인용 조항을 제12조제3항에서 제15조제3항으로 오기 수정(안 - 제16조)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(참조 : 인증산업진흥과장, 주소 :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,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(전화: 043-870-5502, 전자우편: kyungdh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고,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r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고시·공고 → 공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기술·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신기술·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(NET)인증, 신제품(NEP)인증 평가기관은 신기술(NET)지정, 신제품(NEP)지정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총괄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 총괄지원기관은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지정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신기술 · 신제품 인증 관련</u> <u>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</u>	<u>신기술 · 신제품 지정 관련</u> <u>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</u>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산업기술 혁신촉진법시행령」(이하 “ <u>영</u> ”이라 한다)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, 신제품 <u>인증</u>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정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“평가기관”이라 함은 <u>영</u> 제57조제5항에 따른 <u>인증</u>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 ② “총괄지원기관”이라 함은 <u>영</u> 제57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<u>인증</u>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----- <u>지정</u>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<u>지정</u> ----- -----.
제3조(평가기관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<u>영</u> 제57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<u>인증</u> 의 심사	제3조(평가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정</u> -----

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
3.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
4. 인증,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
5. 신제품,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위한 심사
6. 인증신기술,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
7. 신기술,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
8. 인증서 및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
9. 10. (생략)
11.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제10호에 의한 평가업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지정 -----

3. 지정 -----
--
4. 지정, 지정 -----

5. ----- 지정 -----

6. 지정신기술, 지정신제품-----

7. ----- 지정-----

8. 지정서 -----

9. 10. (현행과 같음)
11. -- 지정 -----

③ -----

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
2. (생략)
3. 인증평가 절차
4. (생략)
5. 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)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,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평가기관 지정기준 등)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.

1. 2. (생략)
3.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

② (생략)

-----.

1. 지정심사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지정평-----
4. (현행과 같음)
5. --- 지정 -----

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) ① -----
지정제도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평가기관 지정기준 등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지정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평가기관 지정 신청)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(이하 “지정신청기관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인증 심사업무 계획서
- 3.·4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·② (생략)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.

1. 신기술·신제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
2. ~ 4. (생략)
- ④·⑤ (생략)

제11조(평가기관 지정) ① (생략)

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7조(평가기관 지정 신청) ① 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지정 -----
- 3.·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 지정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평가기관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<u>인증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</u>	4. <u>지정제도</u> ----- --
5. ~ 9. (생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총괄지원기관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<u>인증</u>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총괄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	제15조(총괄지원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정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</u>	3.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정</u> ----- ----- -----
③ 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.
1. <u>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</u> 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점검	1. <u>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</u> ----- -----

2. <u>인증평가매뉴얼</u> 관리	2. <u>지정평가매뉴얼</u> 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<u>인증실적</u> 확인 및 통계 관리	4. <u>지정실적</u> 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7. 기타 <u>인증제도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	7. --- <u>지정제도</u> ----- -----
제16조(조직 및 인원) ①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.	제16조(조직 및 인원) ① ----- ----- <u>제15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
②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<u>인증</u>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지정</u> ----- ----- -----.

평가기관 평가표

지정제도	☐ 신기술(NET)		☐ 신제품(NEP)				
신청기관		대표자					
평가항목	배점	등급별 배점					평점
		아주 미흡	미흡	보통	우수	아주 우수	
○ 평가업무의 전문성(30점)	30						
○ 평가업무 조직의 적절성	10	2	4	6	8	10	
○ 유사업무 수행경력	10	2	4	6	8	10	
○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	10	2	4	6	8	10	
○ 평가기관 요구사항(40점)	40						
○ 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메커니즘	20	4	8	12	16	20	
○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	10	2	4	6	8	10	
○ 경영 시스템(문서 및 기록)	10	2	4	6	8	10	
○ 업무 수행 계획(30점)	30						
○ 예산책정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	10	2	4	6	8	10	
○ 지정심사 업무규정의 적절성	10	2	4	6	8	10	
○ 지정제도 발전에 기여 가능성	10	2	4	6	8	10	
☐ 합 계	100						
평가결과	총점 점						
평가의견							
(인)							

평가기관 지정서

기 관 명 :

대표자명 :

주 소 :

지정평가 제도 :
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제57조제6항에 의거하여
위의 기관을 지정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지정기간 :

부터

까지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직인